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재임하고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재임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2명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무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출년월일 : 1996. 9. 12.

제 출 자 : 총무재무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9.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6. 9. 10.

다. 상정일자 : 제40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6. 9. 13.) 상정, 심사
제40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96. 9.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평신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95.8.4.), 같은법 시행령(96.1.19.) 및 같은법 시행규칙(96.2.5.)이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특히 청소재정의 수요급증으로 폐기물수수료의 불가피한 인상과 대행업체 반입처리 비용 부담을 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거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친화적 청소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폐기물관련 용어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변경함. (안 제2조)
-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을 광역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그에 따른 비용징수 근거 마련. (안 제7조, 제31조제1항)
-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것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종량제 실시대상)으로 수집·운반·처리토록 함. (안 제12조제2항)
-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인상 조정함. (안 제18조 관련 별표2)
- 대형폐기물수수료를 현실화함. (안 제29조제1항제2호 별표4)
- 대행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반입처리비 징수근거 마련. (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안 제18조에 의한 별표2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중 일반규격봉투의 가격을 보면 평균 43%가 인상되었음.

이를 서울시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85.5%를 인상한 동대문구를 비롯하여 40%이상 인상한 지역은 현재 7개구임.

'96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 조성비용중 2단계 매립지조성비를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자치구별로 차등부과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 구는 약 137억 9천여만원을 지출해야 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96년도부터 쓰레기반입비를 t당 5,500원에서 50.7%를 올린 8,290원을 받고 있는 등 우리구의 청소재정자립도가 20%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요인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정부가 책정한 올해 물가상승률 억제목표선인 4.5%를 이미 넘어섰고, 하반기 개인서비스요금과 일부 공공요금 인상등이 지역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기는 하나, 지자체 실시 이후 계속된 각종 공과금 인상조치로 가계에 주름살이 가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또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는 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은 먼저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그 인상폭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동 조례안에서 조례체계상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보면, 제2조제9호의 규정은 제16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는 “구의회”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과 동조 제1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의 규정은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은 제16조의 규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각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14조중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 2회(반기별 1회)이상”에서 “년 4회(분기별 1회)이상”으로 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보며, 제28조

제2항은 제33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임.

제29조제1항제2호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동조제2항중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제33조제2항중 “수집운반수수료”, 동조제5항중 “수집운반수수료”, 제34조제3항중 “수수료 및 처리비” 및 별표4 “수집운반수수료”는 대형폐기물수수료에 처리비가 포함되는 성격이므로 각각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명칭을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김동휘 위원) : 서울시 구별 규격봉투 가격 현황을 보면 구별로 가격 차이가 많은데 마포구가 43%를 올리는 이유는?

○답변요지(윤병여 시민국장) : 쓰레기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고, 구의 재정자립도와 연관이 있어 현실화시켜야 하며, 저회와 비슷한 구와 형평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직영과 대행업체의 비율은 얼마이며, 향후 100% 대행업체로 할 수는 없는가?

○답변요지(윤병여 시민국장) : 대행업체를 확대하면 재정부담을 덜 갖게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결성이 되어 있어 환경미화원의 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확대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요지(유동균 위원) : 규격봉투의 가격 인상률이 43%로 되어 있는데 약간 조정할 수는 없는가?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 규격봉투의 가격 인상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계수조정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으로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6. 9. 14. 이응원위원의 1인

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117
----------	-----

제출년월일 : 1996. 9. 14.

제 출 자 : 시민보건의원장

1. 수정이유

-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급규격봉투의 가격 인상폭을 조정하며, 중복되는 내용 등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수정주요골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2조제9호, 제28조제2항)

-관련 규정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함. (안 제10조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

-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 (안 제14조)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을 조정함. (안 제18조 관련 별표2)

-부적당한 용어를 수정함. (안 제7조제3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29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3항, 제29조 관련 별표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9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안 제14조중 “년 2회(반기별 1회)”를 “년 4회(분기별 1회)”로 한다.

안 제28조 제1항중 “①종량제폐기물”을 “종량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29조제1항제2호중 “수집·운반수수료”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한다.

안 제33조제2항중 “수집·운반수수료”를 “수

집·운반·처리수수료”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수집·운반수수료”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한다.

안 제34조제3항중 “수수료 및 처리비”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한다.

안 별표2중 “〈일반규격봉투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원)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 ℓ	90	
10 ℓ	170	
20 ℓ	340	360
30 ℓ	490	530
50 ℓ	820	880
75 ℓ		1,300
100 ℓ		1,750

안 발표4중 “수집·운반수수료”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원안 ·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9. 「종량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관급규격봉투에 의하여 배출되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1. ~ 8. “원안과 같음”</p> <p>9. “삭 제”</p>	
<p>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등) ①~② “생 략”</p> <p>③구와 다른 자치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u></p> <p>④~⑤ “생 략”</p>	<p>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등) ①~② “원안과 같음”</p> <p>③-----</p> <p>-----</p> <p>----- <u>구의회</u> -----</p> <p>-----</p> <p>④~⑤ “원안과 같음”</p>	
<p>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 “생 략”</p> <p>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u>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생활폐기물</u>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1. <u>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2. ~ 5. “생 략”</p> <p>③ “생 략”</p>	<p>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 “원안과 같음”</p> <p>②-----</p> <p>----- <u>제16조</u> -----</p> <p>-----</p> <p>1. <u>제16조</u> -----</p> <p>-----</p> <p>-----</p> <p>2. ~ 5.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제14조(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u>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p>제14조(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p> <p>-----</p> <p>-----</p> <p>-----</p> <p>----- <u>년 4회(분기별 1회)</u> -----</p> <p>-----</p>	

원 안	수 정 안	비 고
<p>제28조(종량제 폐기물수수료등 부과·징수) ①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을 하되,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판매이율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p> <p>②규격봉투대금은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p>	<p>제28조(종량제 폐기물수수료등 부과·징수) 종량제 폐기물의 -----</p> <p>-----</p> <p>-----</p> <p>-----</p> <p>-----</p> <p>② “삭 제”</p>	
<p>제29조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생 략”</p> <p>2. 대형폐기물의 <u>수집·운반수수료</u>는 “별표4와” 같다.</p> <p>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u>수집·운반수수료</u> 및 <u>처리비</u>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p>	<p>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p> <p>-----</p> <p>-----</p> <p>-----</p> <p>1. “원안과 같음”</p> <p>2. -----<u>수집·운반·처리수수료</u>-----</p> <p>-----</p> <p>② -----<u>수집·운반·처리수수료</u>-----</p> <p>-----</p>	
<p>제33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① “생 략”</p> <p>②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u>수집·운반수수료</u>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③~④ “생 략”</p> <p>⑤제1항의 규격봉투판매대금 납부고지서, 제2항의 대형폐기물 <u>수집·운반수수료</u> 납부고지서, 제3항의 규격봉투제작비 납부고지서, 제4항의 폐기물처리비용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체납시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p>	<p>제33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p> <p><u>수집·운반·처리수수료</u>-----</p> <p>-----</p> <p>-----</p> <p>③~④ “원안과 같음”</p> <p>⑤-----</p> <p>-----<u>수집·운반·처리수수료</u>-----</p> <p>-----</p> <p>-----</p> <p>-----</p>	용어정리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제34조(가산금등) ①~② “생 략” ③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별표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품목별 부과기준 (제29조 관련)	제34조(가산금등) ①~②“원안과 같음” ③----- <u>수집·운반·처리 수수료</u> ----- ----- ----- ----- ----- ----- (별표4) ----- <u>수집·운반·처리수수료</u> ----- -----	용어정리 용어정리
“생 략”	“원안과 같음”	

원안·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2) <일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원)	(별표2) <일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가정용</th> <th style="width: 50%;">사업장용</th> </tr> </thead> <tbody> <tr> <td>5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1 0 0</u></td> <td></td> </tr> <tr> <td>10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2 0 0</u></td> <td></td> </tr> <tr> <td>20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3 8 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3 9 0</u></td> </tr> <tr> <td>30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5 6 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5 8 0</u></td> </tr> <tr> <td>50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9 2 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9 5 0</u></td> </tr> <tr> <td>75 ℓ</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1, 3 9 0</u></td> </tr> <tr> <td>100 ℓ</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1, 9 1 0</u></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 ℓ	<u>1 0 0</u>		10 ℓ	<u>2 0 0</u>		20 ℓ	<u>3 8 0</u>	<u>3 9 0</u>	30 ℓ	<u>5 6 0</u>	<u>5 8 0</u>	50 ℓ	<u>9 2 0</u>	<u>9 5 0</u>	75 ℓ		<u>1, 3 9 0</u>	100 ℓ		<u>1, 9 1 0</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가정용</th> <th style="width: 50%;">사업장용</th> </tr> </thead> <tbody> <tr> <td>5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9 0</u></td> <td></td> </tr> <tr> <td>10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1 7 0</u></td> <td></td> </tr> <tr> <td>20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3 4 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3 6 0</u></td> </tr> <tr> <td>30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4 9 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5 3 0</u></td> </tr> <tr> <td>50 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u>8 2 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8 8 0</u></td> </tr> <tr> <td>75 ℓ</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1, 3 0 0</u></td> </tr> <tr> <td>100 ℓ</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1, 7 5 0</u></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 ℓ	<u>9 0</u>		10 ℓ	<u>1 7 0</u>		20 ℓ	<u>3 4 0</u>	<u>3 6 0</u>	30 ℓ	<u>4 9 0</u>	<u>5 3 0</u>	50 ℓ	<u>8 2 0</u>	<u>8 8 0</u>	75 ℓ		<u>1, 3 0 0</u>	100 ℓ		<u>1, 7 5 0</u>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 ℓ	<u>1 0 0</u>																																																
10 ℓ	<u>2 0 0</u>																																																
20 ℓ	<u>3 8 0</u>	<u>3 9 0</u>																																															
30 ℓ	<u>5 6 0</u>	<u>5 8 0</u>																																															
50 ℓ	<u>9 2 0</u>	<u>9 5 0</u>																																															
75 ℓ		<u>1, 3 9 0</u>																																															
100 ℓ		<u>1, 9 1 0</u>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5 ℓ	<u>9 0</u>																																																
10 ℓ	<u>1 7 0</u>																																																
20 ℓ	<u>3 4 0</u>	<u>3 6 0</u>																																															
30 ℓ	<u>4 9 0</u>	<u>5 3 0</u>																																															
50 ℓ	<u>8 2 0</u>	<u>8 8 0</u>																																															
75 ℓ		<u>1, 3 0 0</u>																																															
100 ℓ		<u>1, 7 5 0</u>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1996. 8. 9.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95.8.4.), 같은법 시행령(96.1.19.) 및 같은법 시행규칙(96.2.5.)이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특히 청소재정의 수요급증으로 폐기물수수료의 불가피한 인상과 대행업체 반입처리비용 부담을 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거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친화적 청소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폐기물관련 용어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변경함(안 제2조).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을 광역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그에 따른 비용징수 근거마련(안 제7조, 제32조제1항).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것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종량제 실시대상)으로 수집·운반·처리토록 함(안 제12조제2항).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인상 조정함(안 제18조 관련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함(안 제29조제1항제2호 별표 4)

○대행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반입처리비 징수근거 마련(안 제32조)

3.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1995.8.4. 법률제4970호) 제2조, 제5조 등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제5069호) 제15조

4. 참고사항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건설폐기물 등 영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업재치및공장설립에관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중량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관급규격봉투에 의하여 배출되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리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책무) ①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

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구와 다른 자치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등의 처리대행)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규칙 제17조의 허가기준 및 요건 구비 여부

③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

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5. 기타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에는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

야 한다.

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정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마포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수수료 과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5조(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 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폐기물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규격가정용봉투에 제2조제4호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일반규격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정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의 관리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구청장 또는 동장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사업장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 봉투는 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

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격봉투판매인에게 제18조 별표 2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규격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규격봉투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규격봉투판매인이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
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기타 행정 지시사항 이행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규격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규격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현금 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봉투현금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규격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수령받고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5장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등 부과·징수) ①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규격봉투대금은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0조(규격봉투 제작비등의 부과·징수) 제

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인계하는 규격봉투제작비의

부과·징수금액은 실 제작비에 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②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는 당해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업체별 반입처리비용 및 폐기물 유형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업체별 폐기물량에 의거 안분된 반입처리비용으로 같음한다.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규격봉투판매업주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제작비는 구청장이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이 통보될 때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제1항의 규격봉투판매대금 납부고지서, 제2항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납부고지서, 제3호의 규격봉투제작비 납부고지서, 제4항의 폐기물처리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체납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4조(가산금 등) ①제3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구일

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매년 1.1~매년 6.30)기간중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해당년도 1월1일 현재 일반연체이자율을, 하반기(매년 7.1~매년 12.31)기간중에는 해당년도 7월1일 현재 일반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 규격봉투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한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등지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7장 보 칙

제4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은 1996. 11. 1.부터 시행하며, 이미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인상후 1월까지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을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하여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부피축소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페스티로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을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히 행구어 배출 -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 무가 부여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날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대리점 포함)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패 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별지 2>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제18조 관련)

<일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원)

구 분	가 정 용	사업장용
5 ℓ	100	-
10 ℓ	200	-
20 ℓ	380	390
30 ℓ	560	580
50 ℓ	920	950
75 ℓ	-	1390
100 ℓ	-	1910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원)

구 분	가 정 용	사업장용
50 ℓ	1,800	1,800

<별표 3>

규격봉투판매소표지판



- 주: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떨어져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9조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 원)	비고
냉장고	500ℓ 이상	11,000	
	300ℓ 이상	8,000	
	300ℓ 미만	6,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12인치 이상	4,000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5,000	
세탁기		4,000	
에어콘	26m ² 형 이상	11,000	
	66m ² 형 이상	7,000	
	66m ² 형 미만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6,000	
	높이 1m 미만	3,000	
탈수기		3,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3,000	
장농	120cm 1축	18,000	
	90cm 1축	13,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4단 이하	3,000	
신발장		3,000	
문갑		4,000	
화장대		4,000	
장식장		6,000	
응접세트	장의자	7,000	
	의자	3,000	
침대	1인용	13,000	
	1인용 매트리스	7,000	
	2인용	18,000	
	2인용 매트리스	11,000	
캐비닛		6,000	
화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3단 이하	3,000	
양수책상		9,000	
편수책상		6,000	
피아노		18,000	
울겐		6,000	
쌀통		3,000	
난로		3,000	
선풍기	가정용	2,000	
	산업용	3,000	
자전거	성인용(2발)	4,000	
	아동용(2발)	4,000	
	아동용(3발)	3,000	
유모차		3,000	

(주)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은행·수·축협 등)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년도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잠수입 (목)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등), 우체국, 새마을금고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의견진술기간	까지	의견진술장소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년 월 일

특기사항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 서식, 갑, 을, 병, 정을 각각 복사용먹지 부착 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을)

(과 처분자 통지용)

【 과 태 료 처 분 및 납 부 통 지 서 】

발행번호	계 호	년도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 (목)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등), 우체국, 새마을금고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의견진술기간	까지	의견진술장소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 g/m²)

(병)

(수납은행 보관용)

【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	제 호	년도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 (목)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등), 우체국, 새마을금고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수 납 일 자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정)

(개인봉지용)

【 과 태 료 납 부 서 영 수 증 】

발행번호	계 호	년도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직세외수입(항)잠수입 (목)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등), 우체국, 새마을금고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수 납 일 자 인

취 급 자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 g/m²)

58

(무)

(구청 통보용)

【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	계 호	년도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 (목)과태료(폐기물관리법위반)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등), 우체국, 새마을금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

수납일자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취급자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 g/m²)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		⑦당초납부기한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등)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성 명:

①고지금액	②취소(변경)액	③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수 신

제 목: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⑥과태료금액	
	⑤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및 담당공무원 의견서 각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규 격 봉 투 현 금 교 환 확 인 서			
성명(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번지 호		
현금교환 사 유			
교환수량	, ,	매	현금교환금액 원
현금교환규격봉투관매소명			

위 사람은 (전출, 기타)사유로 규격봉투 현금교환대상자임을 확인하며, 현금교환 신청매수와 신청금액에 한하여 현금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동 장 인

(발행일로부터 7일간 유효함)

<별지 제9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봉지서 번호	③과태료 처분 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⑦금액 (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